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8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제17조(수수료)의 위임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광고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수수료」(별표4) 수수료 금액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고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수수료」(별표4) 수수료 금액의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18. 10. 23. ~ 11. 11.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
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개정 2018.00.00.)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2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시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2조제1항제2호 관련) <table><tr><th>광고물등의 종류</th><th>적용기준</th><th>수수료</th></tr><tr><td>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시조례 제5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td><td>-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14,000원 20,000원 800원</td></tr><tr><td>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td><td>-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14,000원 20,000원 1,600원</td></tr><tr><td>다.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td><td>-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21,000원 38,000원 1,300원</td></tr><tr><td>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td><td>-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14,000원 20,000원 800원</td></tr><tr><td>마. 애드벌룬(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td><td>-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td><td></td></tr><tr><td>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td><td>-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td><td></td></tr><tr><td>사. 현수막 게시시설</td><td>- 연면적 3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11,000원 600원</td></tr><tr><td>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td><td>-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td><td></td></tr></table>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시조례 제5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2조제1항제2호 관련) <table><tr><th>광고물등의 종류</th><th>적용기준</th><th>수수료</th></tr><tr><td>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시조례 제5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td><td>-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18,000원 26,000원 1,000원</td></tr><tr><td>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td><td>-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18,000원 26,000원 2,000원</td></tr><tr><td>다.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td><td>-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27,000원 49,000원 1,600원</td></tr><tr><td>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td><td>-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18,000원 26,000원 1,000원</td></tr><tr><td>마. 애드벌룬(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td><td>-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td><td></td></tr><tr><td>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td><td>-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td><td></td></tr><tr><td>사. 현수막 게시시설</td><td>- 연면적 3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td>14,000원 800원</td></tr><tr><td>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td><td>-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td><td></td></tr></table>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시조례 제5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시조례 제5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시조례 제5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